

미래에셋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설명서

■ 계좌개요

제도개요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및 하위 법령에 의해 중개형 ISA 계좌가 신설되었으며 매매가능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
가입대상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 기준 만19세 이상 국내 거주자,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~19세 미만 거주자,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 및 연장 불가합니다.</p>
부적격 통보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③)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 : 다음연도 2월 말 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: 다음연도 4월 30일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확인 - 만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: 다음연도 8월 31일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,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의 소멸 혹은 추징,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.</p>
납입한도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납입한도 = 2천만원 × [1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-누적 납입금액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총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·소득공제장기펀드의 한도를 차감하여 관리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형저축·소득공제장기펀드 해지 후 남은 한도는 한도증액 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.</p>
최소가입금액	<p><input type="checkbox"/> 1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입일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입금일</p>
만기	<p><input type="checkbox"/> 3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</p> <p>※ ISA 계좌개설일에 미 입금 시 만기일은 가입일(입금일)에 맞춰 순연됩니다.</p> <p>(ex. 만기 '27.3.22로 '24.3.22에 계좌개설 후 '24.4.22 입금 시 만기는 '27.4.22로 순연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 까지만 가능합니다. (만기일부터 연장 불가)</p>
만기해지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는 현금화 해지와 실물(일부 혹은 전체)보유 해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실물보유해지 시 해지 이후의 매도(환매), 배당금 등 입금 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지 시점에 과세이연을 통한 과세부분이 일괄 처리되며 이때 해지일 이후의 매도(환매), 배당금 등은 일반과세 대상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. 추가입금 또는 보유상품 매도를 통해 세액납부 및 해지 가능합니다.</p>
중도인출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,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한 한도는 재생성되지 않으며 잔여한도 만큼만 입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출일 현재 일반과세 된다고 가정 시 예상되는 제세금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 ISA 출금가능금액 = {Min[순납입금액, 인출가능현금]-총세액(거래세제외)-1원} (단, 출금가능금액 < 0 이면 출금불가)</p>
중도해지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해지 시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(일부해지 불가)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해지(가입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해지 사유는 제외)시 해당 계좌는 해지되고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가 중도해지를 위해 계좌에 운용중인 상품을 해당 상품의 만기(의무가입기간)일 도래 전 해지할 경우,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배당 혹은 이자 수익의 감소 또는 과</p>

	<p>세 혜택 적용 불가 등 제반 불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. 추가입금 또는 보유상품 매도를 통해 세액납부 및 해지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.</p>
비저축금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저축금은 유상청약, 주식관련 사채청약 등 권리행사 및 세금미수시 납입한도가 부족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저축 입금은 내점 또는 유선으로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하고 당사 중개형ISA 계좌간 계좌대체 약정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</p>
중도해지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
■ 과세 특례

	유형	일반형	서민형	농어민형
	비과세 한도	200만원	400만원	
비과세 한도 등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는 3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민형 : ①총급여 5천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 - 농어민 :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의 농어민 <p>※ 서민형 가입 후 만기연장 시 일반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만기연장 후의 유형으로 세제혜택 적용됩니다.</p>			
분리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초과 소득분에 대해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,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음)			
손익통산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손익통산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유형별(일반형 또는 서민형/농어민형) 비과세한도 초과소득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각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계좌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의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(원미만 절사)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 ISA는 과표대상 소득금액에서 제비용(매매수수료, 증권거래세 등)을 차감 후, 주식매매차순(주식매매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최종 손실분)을 합산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해지(인출)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(일반과세 처리).</p>			
특별해지 사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의 사망, 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2. 투자자의 퇴직 3. 사업장의 폐업 4. 투자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, 질병의 발생 5. 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인가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			

■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

기타 투자자 유의사항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 ISA 계좌 내 예수금은 예탁금이용료 지급 대상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,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 ISA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개형ISA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 가능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
-------------	--

□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- ※ 투자자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시고,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.
- ※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, 영업점 및 고객센터(☎1588-6800)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람, 고객 불편 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당사 홈페이지(<http://securities.miraeasset.com>) 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